

구미원예수출공사 토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2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2008. 4. 25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 청산명령을 받고 있음.
그 내용은 (2009년 말까지 구미원예수출공사가 흑자를 내지 못할 경우)
- 원예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매년 납부하는 토지 대부료를 감면하여 부담을 줄여 줌으로서 금년 말까지 흑자경영 달성코자함.
(단, 원예공사가 흑자경영으로 대부료 납부능력이 있는 때에는 본 효력은 상실됨.)

2. 주요내용

《대부재산》

□ 토지대부 계약내역

- 위 치 :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0-1번지 외 32필지
- 대부면적 : 101,594㎡(30,732평)
- 대부금액 : 25,553천원
- 대부기간 : 2008. 3. 1 ~ 2010. 2. 28
- 대 부 자 : 구미원예수출공사 사장
- 대부요율 :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(공시지가 기준)

3. 근거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3호,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

재산조서 현황

구 분			건 물		토 지		기 타
			동 수	연면적(m)	필 지	면적(m²)	
합계					33	101,594	
공 유 재 산	소계				33	101,594	
	행정 재산	계					
		공용재산					
		공공용재산					
		기업용재산					
		보존재산					
	일반 재산	행정재산외의 모든공유재산			33	101,594	
국 유 재 산	소계						
	행정 재산	계					
		공용재산					
		공공용재산					
		기업용재산					
		보존재산					
	일반 재산	행정재산외의 모든공유재산					

토지조서 현황

토지소재지	지번	지목	면 적 (m²)	소 유 권		비고
				주 소	성명	
구미원예수출공사부지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	10-1번지 외 32필	전, 답	101,594	구미시 송정동 50번지	구미시장	

대부료 감면대상 토지

□ 대부료 감면대상 표시 : 구미원예수출공사 토지

○ 소재지 :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0-1번지외 32필지

○ 지목 및 면적 : 전, 답 등 101,594m²(30,732평)

□ 지적도 및 위치도



□ 원예공사 전경도



《관 계 법 령》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32조(대부료) ①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.

제34조(대부료의 감면) ①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 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2.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-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-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29조(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) ①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대부 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.
<일부개정 2006.10.27, 2006.12.30, 2008.4.18, 2008.12.31>

1.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법인·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
2.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때
3.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
4. 임야를 목축·광업·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때
5.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

6.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때
7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
8.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때
9. 「건축법」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 토지와 이해관계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때
10. 대장가액이 3천만원(특별시·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)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
12.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
13. 당해 시·도, 시·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·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
14. 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때
15.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
16.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
17. 천재·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때
18.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대부하는 때
19.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때
20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

21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때
22.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때
23.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때
24.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
25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때

제35조(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) ①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6.12.30>

1.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천재·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
3.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
4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

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
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유재산
3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공유재산